

대학인권센터규정

제정 2022.0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본 대학교 대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 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5.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8. “당사자”란 피해자, 피신고인을 말한다.
9. “참고인”이란 신고인 및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한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대학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에는 인권위원회를 두며, 위원 및 전문인력을 둔다.
- ④ 센터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인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제대학교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권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학생 3명과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인권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 계획
2.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
3.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4. 구성원의 인권침해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관행개선
5.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사건처리 절차

제11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등 상담을 원하거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처리 신청은 [별표1호 서식], [별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요청기한)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구제 청구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방법 및 보고) ① 센터장과 위원 및 상담사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학과 및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인권침해 범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각하) 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미응답할 경우
3.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조치)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에 대한 결정이전이라도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즉시 중지
2.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 강의실, 연구실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4. 기타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사건처리) ① 당사자는 피해 해결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은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④ 센터장은 당사자 간 화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건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회부하지 아니한다.
- ⑤ 센터장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⑥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제17조(구제조치 등) 센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나 직권조사에 따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신고인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2. 당사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등 의견표명
3.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 요구
4.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이 반성할 수 있는 조치

제18조(비밀유지의무) ①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③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고 서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접 수 자	(서명)

신고인	이름		
	소속	학번 또는 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성별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이름		
	소속	학번 또는 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성별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신고에 대한 당자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피신고인	이름		
	소속	학번 또는 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성별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아는사람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선배 <input type="checkbox"/> 후배 <input type="checkbox"/> 연인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제자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르는사람	<input type="checkbox"/> 학내관계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내관계 없음
※ 사건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			

